

출장보고서

I. 출장 개요

1. 출장건명: DDA 농업협상 참석에 대한 출장결과
2. 출장목적: 전체회의, Room D 및 G10, G33 그룹 회의 참석
3. 출장지역: 스위스 제네바
4. 출장기간: 2008. 5. 25(일) ~ 5. 31(토)(5박 7일)
5. 출 장 자

부서명(기관명)	직 급	성 명
국제농업연구센터	초청연구원	신유선

6. 출장일정

일 정	주요 활동내역	비 고
5. 26(월)	08:30 G10 회의	DDA 농업협상
	12:00 G33 회의	"
	15:00 Open-ended 비공식 전체회의	"
5. 27(화)	08:30 G10 회의	"
	12:00 G33 회의	"
	15:00 Room D 회의	"
5. 28(수)	10:30 SP/SSM관련 소그룹 회의	"
	14:30 G33 회의	"
5. 29(목)	10:00 G10 회의	"
	15:00 Room D 회의	"
	18:00 미국과의 양자 협상	"
5. 30(금)	11:00 관세상환 관련 소그룹회의	"

7. 주요 방문기관 및 면담자

소속기관	직 급	성 명	연 락 처
WTO	-	-	-

II. 주요 출장 결과

[5월 26일(월)]

가. G10 회의: G10 발언문 및 향후 전략

□ 주요 내용

- 5월 19일에 배포된 의장 세부원칙(Modality) 2차 수정안에 대한 G10 여타 국가들의 평가를 확인하고, 5월 26일 오후로 예정된 비공식 open-ended에 대비한 G10 발언문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 2차 수정안 평가

- 관세감축공식
 - 관세감축공식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관세감축률만 중간수치로 제시하였고 []를 삭제하였다고 지적하며, []의 삭제는 이에 대한 합의점을 찾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함.
 - 대만은 평균감축률 계산시 민감품목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민감품목은 TRQ를 보상하였으므로 평균감축률 계산시 민감품목의 경우 deviation 없는 구간별 감축율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함.
- 민감품목(Sensitive Product)
 - 민감품목 관련, 일본은 71항(민감품목수)의 마지막 문장이 자국에 적용된다고 설명하며 동 문장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을 제기함.
 - 노웨이는 76항의 import penetration에 따른 TRQ 감축 조정이 모든 deviation에 적용토록 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우리나라는 민감품목 개수가 여전히 기대수준 이하이고 TRQ 증량 수준은 높은 수준인바 이에 대해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또한 78항의 TRQ 이행기간은 다른 부분의 이행기간과 같이 5년 및 8년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이에도 개도국우대(S&D)가 필요하

다고 강조함.

○ 75항

- 대만은 para 75항에서 G10제안 중 개도국 S&D는 반영되었으나, 4%를 민감품목수(entitlement of Sensitive products)로 변경하고 개도국 특별품목을 제외하는 것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함.
- 우리나라는 대만의 지적에 공감을 표하면서 이에 덧붙여 개도국의 경우 TRQ 추가증량물량에 대한 S&D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 스위스도 4% 수치는 너무 낮은 바 동 수치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함.
- 이에 일본은 4%를 민감품목수로 조정시 수출국들이 비민감품목에 대해 관세상한을 도입할 것을 주장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응 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 쿼터내 관세

- 일본은 2차 수정안의 2개의 옵션 중, 1안이 TRQ 창설을 인정하고 민감품목과 비민감품목을 구분하여 다른 대우를 적용하고 있는바 1안을 지지한다고 발언함.
- 이에 대만과 스위스도 1안이 더 합리적이고 이를 선호한다고 언급함.
- 우리나라는 1안이 더 합리적이기는 하나 여전히 감축수준이 높고 G10 입장과는 차이가 있는바, 1안을 지지한다는 주장보다는 1안도 여전히 level of ambition이 높다고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관세단순화(Tariff Simplification)

- 일본은 99항과 관련하여 의장이 관세단순화 수준을 all로 제시한 데 대해 동 단순화 수준에 대한 대안(middle ground approach)을 제시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자국으로서는 90% 수준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놀웨이는 관세단순화 수준과 관련하여 G10내의 공동 입장을 도출되기 어렵다고 본다고 언급함.
 - 대만은 모든 관세의 단순화 주장은 일부 수출국 주장인바 의장이 모든 관세의 단순화 옵션만 남긴 것은 타협적 해결책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함.
 - 우리나라도 대만의 의견에 동조하며 2차 수정안의 99항은 삭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바, 오히려 G10에게 유리해진 것으로 보는바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반대함.
 - 스위스도 99항이 삭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언급함.
- 특별긴급관세(Special Safeguard, SSG)
- 스위스는 SSG 감축수준이 너무 높다고 지적함.
 - 이에 놀웨이는 대안적 수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경사관세(Tariff Escalation)
- 놀웨이는 리스트에 곡류 및 코코아가 추가되어 ambition이 높아졌다고 평가함.
 - 우리나라는 쌀의 경우 husked rice 및 milled rice 등의 경우 민감품목 Attachment A에서도 core 세번으로 구분했듯이 primary products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함.
 - 일본은 곡물을 경사관세리스트에 포함시킨 것을 문제라고 보나, 민감품목으로 지정시 경사관세 대우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언급함.
- 허용보조(Green Box)
- 대만은 6항과 관련하여 의장이 제시한 두 가지 옵션 중에서 예산 제약 규정이 없는 첫 번째 안을 지지한다고 하며, 11항 및 13항에서는 특히 [where applicable] 문안이 삭제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동 문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함.
 - 우리나라도 대만의 입장을 지지하였으며, 일본도 1안을 지지함.

□ 전체회의 발언문

- 일본은 관세감축률과 관련하여 최상위구간 감축률에 협상을 집중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발언문 초안에서 기타 구간 감축률에 대해 지나치게 부정적 평가를 한 점을 지적함.
 - 이에 스위스는 우리나라의 상기 제기사항을 반영한 것이라 설명함.
 - 우리나라는 이 문제제기는 기타 구간 감축률에 []이 삭제된 것과 관련하여 이에 우리가 합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 언급함.
- 우리나라는 쿼터내 관세와 관련하여 상기 주장과 같이 1안도 여전히 감축수준이 높은 바 이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히는 것에 대해 반대하며, 1안은 더 논리적으로 합리적이며 G10입장에 가까우나 여전히 ambition이 높음을 지적할 것을 강조함.
 - 대만 및 일본은 1안이 민감품목과 비민감품목을 구분하여 감축률을 적용하고 있는바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함.
- 노웨이는 관세상한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할 필요성을 제기함.
- 일본은 경사관세와 관련하여 목록에 추가된 데 대해 간단히 언급할 것을 제기함.

나. G33 회의: G33 발언문 및 G33 보고서

□ 주요 내용

- 세부원칙 2차 수정안에 대한 G33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para별 평가보고서 및 5월 26일 오후로 예정된 비공식 open-ended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음.

□ 상세 내용

- 인도네시아(의장국)측은 open-ended 전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G33의 입장 반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5월 23일 HOD회의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 para별 평가보고서를 작성 회람했음을 언급함.
- 우리나라는 팔코너 의장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도록 문안을 다듬고 118항의 관련사항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설명하며 인도네시아 측이 회람한 문안에 대한 수정안을 회람함
 - 인도네시아는 특별품목(Special Product, SP)의 최소 개수에 대한 G33의 본래 입장은 세번의 12%이나 118항의 []의 내용이 삭제될 경우 SP 관련 반대측이 주장하는 대로 세번의 8%로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퇴보라고 주장하며, hybrid approach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함.
- 자메이카는 118항과 관련하여 한국이 제안한 내용이 보다 명확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G33 주장의 핵심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para별 입장정리와 논리구성을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대응할 것을 제의함.
 - 인도, 쿠바, 나이지리아, 케냐, 바베이도스 등 대다수 국가가 이에 동조하며 para별 평가보고서를 금일 open-ended에 제출하지 말자고 주장
- 필리핀은 자메이카의 의견에 공감을 표시하는 한편 118항에 대한 우려사항으로 []이 삭제될 경우 SP의 전체 개수가 8%로 될 수 있는 점, G33이 주장한 3구간 접근이 단일 평균방식으로 변경된 점을 지적하며, 강경한 발언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중국은 118항에 대한 G33의 대안으로 제시된 문안(2월 세부원칙 수정안과 동일)에서 SP 지정개수와 관련하여 [12]를 넣을 필요가 없고 관세감축면제와 관련해서는 [no]를 삭제해야 하며, 세번의 8%에 대해서 관세감축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인도네시아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회의의 의도는 para별 평가보고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보다 정확한 문안이 필요하며 G33 입장만 주장할지 다른 입장도 반영하는 것이 좋을지 등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언급함.

다. 비공식 Open-ended 전체회의: 2차 수정안 평가 및 향후 일정

□ 주요 내용

- 2차 수정안에 대한 평가 및 향후 협상일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 세부 내용

- 우리측은 의장 재수정안이 [] 제거 등 수평적 협의에 상정할 준비가 된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아직 논의할 사항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표명하고, 금주는 물론 필요시 내주에 논의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함을 표명함.
- 논의의 형식에 대해서는 Room D 형식을 선호하나, 회원국들이 희망할 경우 소그룹별 논의의 진행에 동의할 의향이 있으나, 이 경우 희망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문호를 개방해야 할 것임을 표명함.
- 아울러 우리측은 특별품목(SP)과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pecial Safeguard Mechanism, SSM) 관련 G33의 입장을 지지함을 표명하고, 의장 재수정을 추가 수정하여 SP/SSM 관련 문구를 중립적으로 재작성해야 할 것임을 표명함.
- 관세상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언급함.
- 브라질측은 G20그룹을 대표하여 발언하였으며, 의장 재수정안이 기존 논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향후 협상의 좋은 기초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개도국의 식량안보 및 개발 목적에 맞는 협상 결과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S&D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 그린박스 및 모니터링과 감시(M&S)에 G20 제안이 반영된 것과, 면화 관련 Cotton 4 제안이 재수정안에 유지된 점에 대해 환영 의사를 표명함.
 - 국내보조 문제와 관련, 최근의 국제식량 가격 상승을 감안할 때 국내보조 삭감이 어렵다는 선진국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고 강조하고 금번 협상시 국내보조의 실질적인 삭감이 있어야 할 것임을 강조함.
 - 시장접근에 있어 선진국의 민감성이 계속해서 반영될 경우, 협상의 균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하고, 관세상한, 민감품목, SSG, 관세단순화에 있어 우려가 있음을 표명하는 한편, 관세상한 조항이 계속해서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민감/비민감 품목 모두에 공히 관세상한 개념이 적용되어야 하며 75항 상의 관세상한 대안 개념에 반대 입장을 표명함.
 - 민감품목의 관세이탈을 보상할 만한 상당 수준의 TRQ 증량, 선진국의 SSG의 즉각 철폐 및 완전한 관세 단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함.
- 호주측은 케언즈 그룹을 대표하여 발언하였는 바, 의장 재수정안을 평가하면서도 상금 미해결 이슈에 대한 이견차를 좁히기 위한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무역왜곡보조총액(Overall Trade Distorting Support, OTDS)의 상당한 감축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선진국의 SSG 및 쿼터 내 관세는 철폐되어야 하고, SSM에 대해서는 존속기간이 다시 설정되어야 할 것과 도하 이전 양허관세가 추가 관세의 상한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호주측은 이어 자국의 추가적인 입장임을 전제로 관세상한의 도입 필요성(기존의 buy-out option에 대한 불만 표명)을 강조하고, 새로운 TRQ의 신설 금지, SSG 철폐 등을 요구하는 한편, 개도국 S&D 차원에서 도입된 SP에 대한 투명성 강화가 필요할 것임을 표명하고, SSM의 존속기한 철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 스위스측은 G10을 대표하여 발언하였으며, 최상위구간 관세 감축을, 민감품목 숫자, 관세상한에 대한 우려가 여전함을 소개하고, SSG 대상품목 범위 확대, 100% 종가세 전환 문안 삭제 등을 요구함.
- 미국측은 국내보조 및 수출 경쟁 분야의 논의가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잔존 이슈인 [] 위주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임을 표명함.
 - 또한 면화, 시장접근, 열대작물/특혜잡식 논의가 현 단계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협상 타결을 위해 정치적으로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가 되었다는 원칙적인 입장만을 표명함.
- 인도는 현재 진행중인 식량위기 사태를 고려할 때, 지금까지의 논의를 근본적으로 다시 조명하는 paradigm shift가 필요함을 전제하고, 작금의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ambitious outcome, 식량안보 강화 등이 필요할 것임을 주장함.
 - ambitious outcome을 보장하기 위해 선진국들이 유지중인 시장 왜곡적인 국내보조 규범이 실질적으로 제거되도록 해야 할 것임을 주장하는 한편, 시장접근 제 이슈에 대한 보다 강한 규율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을 지적함.
 -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서는 G33에서 주장하고 있는 SP/SSM의 규범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나, 오히려 의장 채수정안은 G33의 협상력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함.
 - 또한 상기 2가지 방안을 고려할 때 지금과 같이 미해결 이슈가 많은 상태에서는 수평적 협의가 개최되더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수평적 협의에 앞서 2차 수정안을 재차 수정하여 개도국의 요구사항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임을 재차 강조함.
 - 한편, 수출보조금과 관련, 운송비에 대한 개도국 예외조항이 UR시 양허여부와 관련 없이 개도국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이 수

정안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일본은 의장 재수정안이 회원국간 이견차를 좁혀나갈 협상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자국과 스위스가 제출한 수출제한 관련 제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기대한다고 언급함.
 - 아울러, 관세상한 개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시적으로 표명하는 한편, SP의 경우 entitlement는 불충분하나, 전체세번을 기준으로 하도록 한 점은 환영함을 표명함.
 - 쿼터내 관세 문제는 민감/비민감 품목을 구분하는 방안이 논리적이라고 언급하고, 향후 열대작물 관련 양자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조만간 결과를 보고할 예정임을 표명함.
- 중국은 G20, G33 입장을 지지하고, 의장의 재수정안이 선진국에는 많은 신축성을 부여한 반면, 개도국의 입장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선·개도국간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지적함.
 - 민감품목 관련 개도국에 TRQ 증량 이외의 대안을 인정한 점 등은 개선된 점이나, SP, SSM 이슈에 있어 개도국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함.
 - 미소진 메커니즘(Underfill mechanism)관련 내용은 협상 mandate도 없는 법적 근거가 미약한 이슈라고 주장하고, 존속이 필요한 경우 개도국 S&D 조항이 필요함을 강조함.
 - 관세감축과 SP 관련 RAM에 대한 대우가 재수정안에서 변경된 이유 설명을 요구함.
- EC측은 재수정안의 회람으로 수평적 협의-각료회의 등 다음 단계로 진행할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함.
 - 세부적으로, 시장접근 분야에서는 [] 수가 상당히 감소된 점을 평가하면서도, []이 제거된 모든 분야에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열대작물/특혜잡식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중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진정한 열대작물 위주로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함.

- 캐나다측은 중요한 시기에 의장 재수정안이 회람된 것을 평가함.
 - 세부적으로 OTDS 감축이 농업 협상의 ambition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이나 최근 미 의회를 통과한 2007 농업법으로 인해 의미 있는 수준의 국내보조 감축이 어렵게 된 점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를 표명함.
 - 수출경쟁 분야에서는 수출신용이 180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며, 식량원조의 현금화 조항은 필요 이상으로 확대되어서는 안됨을 강조함.
 - SSG의 수정 내용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SP/SSM의 대우 및 범위에 대해서는 시장접근의 ambition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함.
- 인도네시아측은 G33을 대표하여 그간 G33내 논의를 통해 확정된 별첨 발언문을 토대로 의장 재수정안에 규정된 SP, SSM 문안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향후 수평적 협의시 G33의 협상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중립적인 형태로 재수정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추가 수정안 마련을 요청함.
 - SP 대상품목을 공개하라는 미국 등의 요구에 대해서는 모델리티 합의 전인 현 단계에서는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언급함.
- 모리셔스측은 ACP 그룹을 대표하여 수평적 협상전에 추가 수정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특혜잠식 문제를 EC와 협의중이나 범위나 대우에 있어 아직 실질적인 결과가 나오지 못한 상태임을 설명함.
 - 금번 협상에서는 개발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면화 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 기회가 없다는 것에 아쉬움을 표명하는 한편, SP/SSM에 대한 G33의 입장을 적극 지지함을 표명함.
 - 아울러, EU측과의 협의가 원만히 합의된다는 전제 아래 수평적 협의 이전에 추가 수정안이 제출되어야 할 것임을 표명함.

- 레소토(LDC), 꼬뜨디부아르(아프리카 그룹) 및 부르키나파소(Cotton 4 그룹) 등도 수평적 협의 이전에 추가 수정안이 제출되어야 한다고 요청함.
- 코스타리카측은 열대작물 그룹을 대표하여 발언하였으며, 관련 논의에 진전이 이뤄지고 있으나 아직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소해야 하는 이견차가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동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선진국이 신축성을 보여주기를 희망함.
- 대만측은 RAM을 대표하여 발언하였으며, 관세감축공식상 RAM에 대한 대우와 관련, 상위 2개 구간에서 10 AV point를 차감하고, 하위 2개 구간에서 5 point를 차감하기로 한 현 의장 재수정안이 모든 구간에 대한 10 AV point 차감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태국측은 G20 및 케언즈 그룹의 발언을 지지하며, 관세상한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점과 SP에 대한 자국의 기존 입장을 견지함.
- 파라과이측은 수출국에 최소한의 확신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관세상한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쿼터내 관세의 철폐 및 SSM의 규율 강화를 주장함.
- 아르헨티나는 국내보조에 대한 규율 강화 필요성을 역설하며, 특히 그린박스, 관세단순화, 민감품목 등에 systemic concern이 있다고 언급함.
- 볼리비아측은 전체 DDA 협상에서 유일하게 혜택을 볼 수 있는 분야가 열대작물 분야이나, 금번 재수정안의 내용은 열대작물 관련 규범이 약화되어 강한 우려가 있음을 표명하는 한편, Green room 회의/Room D 회의 등에 참여하지 못하는 국가들을 위해 투명성이 더욱 제고되어야 함을 강조함.

- 에쿠아돌측은 열대작물 그룹의 발언에 동조함을 표명함.
- 베네주엘라, 터키 및 나이지리아측은 G33의 발언에 동조함을 표명하고, SP/SSM에 대한 우려를 재차 강조함.
- 남아공측은 G20, 케언즈그룹 및 아프리카그룹의 발언에 동조함을 표명하는 한편, 금번 의장 재수정안은 선진국을 위한 신축성(특히 일부 product specific flexibility)이 증가된 것에 우려가 있음을 표명하고, 선진국들의 국내보조 감축을 위한 규범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함.
- 쿠웨이트측은 이례적으로 발언권을 요청하여 net food importer로서 작금의 식량가격 상승이 우려된다고 표명하고, 보다 강한 수출제한 규범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고 언급함.

[5월 27일(화)]

가. G10 회의: 국내보조, 시장접근분야 논의

☐ 국내보조분야

- 허용보조 6항(Annex B)과 관련하여, 스위스는 지난 G10회의(5.26)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6항에서 예산 제약을 규정한 2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며 어제 전체회의서 브라질이 예산 제약 조건을 언급하였음을 상기함.
- 주식 1과 관련, 스위스는 동 주석이 EU를 위한 규정이라고 평가함.
 - 이에 놀웨이는 동 규정의 배경을 문의하며 EU와의 회의시 이와 관련하여 논의해볼 필요가 있음을 제기함.
- 11항 및 13항과 관련, 우리나라는 'the options....shall be

considered here also' 문안이 법적 문안이 아님을 지적하고, 11항 및 13항은 6항과 성격이 달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강조함.

- 대만도 11항 및 13항 관련 보조는 그 성격상 증가할 가능성이 큰 바 예산제약조건을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언급함.
- 이에 스위스는 1차 수정안 문안인 [where applicable]을 다시 포함할 것을 요청하기로 함.

- 블루박스 관련, 일본은 블루박스과 Amber box는 별도 기준이 있으므로, 35항에서 블루박스를 AMS 계산시 배제한다는 문안은 이러한 점을 모호하게 할 수 있으므로 동 문안을 삭제해야 한다고 언급함.

□ 시장접근

- TRQ underfill mechanism 관련, 놀웨이는 X% 및 Y%의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며 이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문의함.
- 일본은 의장의 새로운 text에서는 [X%] 및 [Y%]의 []이 삭제되고 a defined percent로 문구가 수정되었는바 모델리티 확정 이전에 X 및 Y의 구체 수치를 결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 언급함.
- 우리나라는 X% 및 Y%가 비록 []형태는 아니지만 이에 대한 논의를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나, 현 단계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밝힘.
- 이에 놀웨이는 지금까지 G10이 수치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였는바 수치를 제시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 언급함.
- 이에 우리나라는 자국으로서는 사실상 X% 및 Y%의 수치가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나 X, Y의 구체적인 수치보다는 2항의 automaticity 관련 문안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동 문안을 기존 G10 제안 문안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함.

- 경사관세와 관련, 놀웨이는 곡물 및 코코아가 리스트에 추가된

것이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주장함에 따라 기존 2월 수정안상의 리스트 방향으로 대응기로 함.

- SSG와 관련하여서는 개수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는데 대해 G10의 공동입장이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이는 추진하지 않기로 함.

나. G33 회의: SP 및 SSM 논의

□ 특별품목(SP)

- 대상품목 관련, 세부원칙 1차 수정안에서 세번의 8%는 최소 수치로 주어지고 최대 수치로 12~20%가 논의된 반면, 금번 재수정안에서는 8~20%로 범위가 하향 조정된 점을 지적함.
- SP 대우와 관련, 기존 수정안의 3단계 구조(3 tier approach)에서 G33이 반대한 바 있는 하빈슨 접근법(평균감축율)을 기초로 한 2단계 구조로 변경된 것을 지적함.
- 우리나라는 평균감축율 도입으로 품목별 감축율 조정에 신축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상기 재수정안의 변화를 무조건 반대하기보다 향후 검토해 볼 의향이 있다는 뉘앙스를 포함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중국 등은 현 단계에서 입장 변경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현행 G33의 입장대로 추진하기로 함.
- SP는 TRQ 및 관세상한의 대상이 안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소규모 취약국(SVE) 및 신규가입국(RAM)에 대한 개도국우대(S&D) 조항 추가

□ SSM

- 발동 대상품목의 제한, UR 양허관세의 상한 설정, 발동기준 등에 대한 G33의 우려를 포함함.

- 발동 기준(124항) 관련, 2번째 옵션을 삭제할 것을 요청함.

다. Room D 회의: 의장이 제기한 조항 논의

- 기존의 para 별 논의형태가 아닌 의장이 제기한 조항(30항, 26항, 42항, 50항)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함.
- 30항(de minimis 감축수준 및 이행기간) 관련, 캐나다는 이행 첫날 감축하되 감축률은 50%로 하는 방안을 제기하였으며 EC, 브라질 등도 이행 첫날 감축을 강조함.
 - 일본은 감축률은 60%로 하되, 이행기간은 일정기간을 두고 감축하면서 다만 이행초기에 더 많이 감축토록 할 것을 제안함.
 - 우리나라는 낮은 수치를 선호하며 개도국은 31항에 따라 선진국보다 이행기간이 3년 더 길어야 함을 강조함.
- 26항(품목특정 AMS 한도 이행기간) 관련, 브라질, 인도, 쿠바 등은 품목특정 AMS 한도는 이행 첫날부터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함.
- 42항(미국의 품목특정 블루박스 한도) 관련, 브라질은 42항이 미국에 많은 신축성을 부여한 것이라고 보며 이를 제한할 것을 강조함.
- 50항(개도국에 있어 신규 품목특정 블루박스 도입시 한도) 관련, 이집트, 브라질, 알제틴, 중국 등은 선진국에 신축성을 부여하듯 개도국에도 신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동 조항을 지지함.
 - 중국측은 기존의 25%로 제한된 규정을 삭제하여 추가 신축성이 제공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함.
 - EC는 개도국에 대해 개도국우대조항이 있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나 역행적이어서는 안된다고 언급하고, 동 조항에서 블루박스 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보조금 감축에 역행하는 것이며 개도국도 허용보조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함.

[5월 28일(수)]

가. SP/SSM 관련 소그룹 회의

□ SSM

- Falconer 의장은 SP/SSM 관련 소그룹 회의시 SSM 관련 현재의 논의를 two route로 구분하여, Route A는 UR bound rate 이하, Route B는 UR bound rate 초월로 우선 구분하고, Route A에 대해서는 품목 수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되, Route B에 대해서는 일정 한도 이내의 품목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방안을 토대로 논의할 것을 제의함.
- 이에 대해 캐나다는 G33측이 요구하고 있는 UR bound rate의 초월을 허용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UR bound rate을 초월한다 하여도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할 것이며, 발동 횟수의 제한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 캐나다는 입장에 대해 브라질 및 미국측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반응한 반면, 호주 및 우루과이측은 논의의 후퇴라는 입장을 표명함.
- 이에 대해 인도, 우리나라 등은 검토해 볼만한 것으로 평가함.

□ 특별품목(SP)

- 캐나다는 SP와 관련, G33측이 평균감축 범위내에서 필요한 만큼의 zero cut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지를 문의한 바, G33측은 zero cut은 정치적인 이슈로서 확보 여부가 협상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척도인 만큼, 없앨 수 있는 상황이 아니나, 기존의 G33 입장과 캐나다는 제안을 절충하여,

- zero cut을 일부 인정하되, 부족한 zero cut은 평균감축율이 적용되는 tier에서 필요한 만큼 사용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표명함.
- SP/SSM에 대한 논의가 진지하게 이어진 바, Falconer 의장은 금일 논의가 매우 유용한 것으로 평가하고, 추가 협의하자는 제안에 대해 모든 참석국들이 동의하였음.

나. G-33 HOD 회의

- 인도측은 금일 소그룹 회의가 유용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논의를 진행시키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된다고 표명함.
 - SSM : UR bound rate 초월이 필요한 품목 수 검토
 - SP : zero cut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나, 이를 확보하기 위해 명시적인 X 수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인지, 아니면 캐나다측에서 제안한 Harbinson 방식에 의한 average cut 대역내에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 및 결정 필요
- 터키측은 전체적인 구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entitlement 등의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선-후가 뒤바뀐 것으로 이해된다고 표명하고, 캐나다측에서 제안한 것이 비농산물협상(NAMA)의 sliding scale가 유사한 것으로 이해되는 바, 금일 논의사항이 G33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 것인지 면밀히 검토할 것을 제의함.
- 필리핀측은 Route B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고 밝히고, zero cut 확보는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강조함.
- 우리측은 SSM에 대한 논의는 어떠한 구조가 검토되는 것인가에 따라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하고, Route B가 가능해지면 여러 제한이 가해질 것인 바, 실제로 유용성이 보장되는지

가 중요한 검토 요소가 될 것이라고 표명함.

- 아울러 zero cut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zero cut은 G33에 있어 정치적인 이슈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임을 재차 표명함.

- 쿠바측은 SP/SSM에 대해 제시되는 타협안이 개발에 해가될 경우, 절대 수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SP/SSM별 논의를 진행하여 요소별 red line을 설정할 것을 제의함.

[5월 29일(목)]

가. G10 회의: 관세상한, 허용보조 논의

- 관세상한 관련, 의장 주최 G10 및 8개 수출국간 소그룹 회의 ("Walk in the Woods")가 5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최됨이 통보되었기 때문에 5월 30일 오전에 후속 G10 회의를 개최하여 G10 측 대응방안에 대해 협의기로 함.
- 허용보조의 생산-비연계 직접보조 수준제약(budget neutrality)에 대한 G10의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고, 쿼터내 관세 감축 관련, 민감/비민감 품목을 구분하여 쿼터내 관세 감축율을 적용하도록 요청기로 함.
- TRQ Underfill Mechanism 관련, automaticity 문구 철회 조건하에 논의되는 동 메커니즘 발동 기준의 구체 수치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기로 함.
 - SSG 대상품목은 세번의 5%로 10년에 걸쳐 감축하는 방안을 요청기로 함.
- OECD 각료회의 계기 추진 중인 G10 각료회의 관련, 참석이 가능한 국가는 우리나라, 스위스, 일본으로, 3개국간 소규모 G10 각료회의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기로 함.

나. Room D 회의: 그린박스, 수출경쟁분야 논의

- 열대작물 논의 관련, 코스타리카와 EU는 협상에 큰 진전(serious progress)이 있었다고 평가되며, 계속하여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함.
- 허용보조 6항 관련, 브라질 및 인도 등은 G20의 제안을 반영하여 상당부분 개선되었다고 평가하며 decoupled 소득보조가 무역왜곡 효과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산제약요건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미국, EU, G10 국가들은 예산제약이 없는 1안을 선호하며, 허용보조는 성격상 무역왜곡효과가 없는바 허용보조에 상한을 설정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언급함.
- 허용보조 주석 5 관련, 코티부아르 및 이집트, 쿠바 등은 동 조항에 African group의 문안을 그대로 반영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며, 개도국의 경우 모든 가격차를 감축대상보조(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AMS)에 산입하지 않도록 할 것을 제안함.

[5월 30일(금)]

가. 관세상한 관련 소그룹회의

- Falconer의장은 관세상한 관련 소그룹 논의시 아래 3가지 이슈를 제기하며, 향후 이를 중심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하고 모든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함.
- ① 관세상한 수치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최대 세번수
 - ② 관세상한 면제 범위의 추가(4-6% + α) 및 적절한 보상
 - ③ 비민감품목 대우(treatment of Non-Sensitive products)

* Falconer 구상 : top tier cut + a

- G10측은 관세상한 이슈의 정치적 민감성을 지적하였고, 우리측은 관세상한에서 SP 제외 문제, 스위스측은 고관세 비민감품목에 대한 TRQ 증량이외 방식적용 문제, 노르웨이측은 TRQ 신설 문제 등을 제기함.
 - 이에 대해 미국측은 기존의 1% 구간경계, line by line payment를 주장하면서 1% 구간경계 이상을 넘을 경우 가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호주와 브라질은 TRQ 신설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함.
- 소그룹회의에 참석한 국가들은 이런 형식의 회의가 유용하다고 평가하고 6월 9일 주간에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함.
 - 이에 따라 6월 9일주간 SOM급 소그룹 회의에 대비,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특히 Falconer가 제시한 3가지 이슈에 대하여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고, 참석대표도 조기에 확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